개인정보보호위원회 **보도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11.12.(목) 10:00 배포 2026.11.11.(수) 20:00

# 개인정보위,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

-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, 파기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**총 1억 7,130만 원의 과징금·과태료,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**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'개인정보위')는 11월 11일(수)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, **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*의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'보호법') 위반행위**에 대하여 **총 6,090만 원**의 **과징금**과 **1억 1,040만 원**의 **과태료**를 **부과**하고 **시정명령** 및 **공표명령**하기로 의결하였다.

* ㈜케이티엠모바일(kt M mobile), ㈜미디어로그(U+유모바일), ㈜에스원(안심모바일), ㈜엘지헬로비전(헬로모바일), 에스케이텔링크㈜(SK 7모바일), ㈜유니컴즈(mobing), ㈜국민은행(KB 리브모바일), ㈜케이티스카이라이프(스카이라이프 모바일)

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뜰폰 업계 전반에서 **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** 및 **시장의 외연 확대**에 치중한 결과, **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**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, 동 분야의 **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조사**를 실시하였다.

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**< 조사 결과(종합) >**

알뜰폰 산업이 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, 업계 전반에서 **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, 접근권한 관리, 접속기록 보관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**이 확인되었으며,

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**제3자 제공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구성**하고, 동의하지 않는 경우 **알뜰폰 개통·이용이 불가능**하도록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아울러, 일부 사업자는 **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**한 사실도 확인하였다.

**<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 >**

조사 대상 사업자의 **주요 위반 내용**과 **처분 결과**는 다음과 같다.

**㈜케이티엠모바일**과 **㈜유니컴즈**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. **㈜미디어로그**는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·개통하면서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, 이를 접수·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.

또한, **에스케이텔링크㈜, ㈜엘지헬로비전, ㈜케이티엠모바일, ㈜미디어로그**는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보관하였다. **㈜케이티스카이라이프**와 **㈜유니컴즈**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으며, **㈜엘지헬로비전**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하였다.

그밖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**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,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미파기 하거나**, 선택적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**동의받는 방법을 위반**하였으며, 이동통신사업자 및 판매점 등 **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** 하였다.

개인정보위는 **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**한 행위(보호법 §24의2① 위반)에 대하여 **㈜케이티엠모바일**에 **1,370만 원, ㈜미디어로그**에 **4,7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**하였으며,

※ 한편, ㈜유니컴즈의 경우,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나,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90만 원 부과

사업자들의 **기타 보호법 위반행위**에 대하여 **총 1억 1,040만 원**의 **과태료**를 부과하고, **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**하였다.

한편, 알뜰폰 사업자들은 **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**(취소, 불가, 보류 등)를

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나, **사업자별로 보관기간이**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**상이**하였다.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'개인정보 보호 원칙'에 따라 보관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, 알뜰폰 **개통(가입) 절차보다 어려운 탈퇴(해지) 절차를 운영**하는 **사업자***에 대해서는 **이를 개선하도록 권고**하였다.

* 개통(가입)은 비대면(웹·앱)으로 가능하나, 탈퇴(해지)는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 등

**< 이번 조사·처분의 의의 >**

이번 조사·처분은 국민 다수*가 이용하는 **알뜰폰 서비스의 가입·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**을 **면밀히 점검**하고 **취약점**을 **개선**한 것에 의의가 있다.

*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약 1,050만 개이며, 전체 이동통신 휴대폰 회선 중 약 18% 차지 (과기정통부 통계: 유·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('26.8. 기준) 참고)

개인정보위는 **알뜰폰 서비스**의 경우 가입·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, 결제정보 등 **중요 개인정보를 처리**하고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알뜰폰 사업자들이 **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**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붙임]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

| 담당 부서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<br>조사2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정은 (02-2100-3121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조사관 | 최홍석 (02-2100-3129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붙임** **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**

| 피심인명 | 보호법 위반 내용 | 위반 조항 | 시정조치(안) |
|---|---|---|---|
| 케이티 엠모바일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• 과징금 1,370만원<br>• 과태료 2,34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개인정보 분리보관 소홀 | 보호법 §21③ |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| • 법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| 보호법 §24의2① | |
| | •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적용 | 보호법 §24의2② | |
| | • 수탁사 관리·감독 소홀 | 보호법 §26④ | |
| | • 안전조치의무 위반(암호화) | 보호법 §29 | |
| 미디어로그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• 과징금 4,720만원<br>• 과태료 1,44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| • 법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| 보호법 §24의2① | |
| | • 수탁사 관리·감독 소홀 | 보호법 §26④ | |
| | • 안전조치의무 위반(암호화) | 보호법 §29 | |
| 에스원 | • 개인정보의 제공 위반(추가적 제공) | 보호법 §17④ | • 과태료 1,08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LG헬로비전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• 과태료 1,53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| • 수탁사 관리·감독 소홀 | 보호법 §26④ | |
| | • 안전조치의무 위반(접속기록, 암호화) | 보호법 §29 | |
| 에스케이 텔링크 | • 개인정보의 제공 위반(추가적 제공) | 보호법 §17④ | • 과태료 1,44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| • 안전조치의무 위반(암호화) | 보호법 §29 | |
| 유니컴즈 | • 개인정보의 제공 위반(추가적 제공) | 보호법 §17④ | • 과태료 1,29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| • 법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| 보호법 §24의2① | |
| | • 수탁사 관리·감독 소홀 | 보호법 §26④ | |
| | • 안전조치의무 위반(접근권한) | 보호법 §29 | |
| 국민은행 | • 개인정보의 제공 위반(추가적 제공) | 보호법 §17④ | • 과태료 1,38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개인정보 미파기 | 보호법 §21① | |
| | •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 | 보호법 §22⑤ | |
|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| • 개인정보의 제공 위반(추가적 제공) | 보호법 §17④ | • 과태료 540만원<br>• 시정명령<br>• 공표명령 |
| | • 수탁사 관리·감독 소홀 | 보호법 §26④ | |
| | • 안전조치의무 위반(접근권한) | 보호법 §29 | |